石油化學工業育成法 解說

李 鐸 淳*

1. 石油化學工業 推進 槪況

國民所得의 急激한 上昇을 期하고 基幹産業을 擴充하여 近代的 産業構造를 構築함으로서 史上 類例 없는 高度의 經濟繁榮을 이룩하는 데 발판이 된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成功裡에 完遂한 政府는 보다 意欲的인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에 着手하였으며, 韓國經濟의 次元을 더욱 높이려는 第2次 5個年計劃의 目標를 達成함에 있어 政府는 石油化學工業 開發計劃을 最重要事業 中의 하나로 定하고 이를 迅速하고 効率的으로 推進하기 爲하여 全力을 傾注하고 있다.

石油化學工業 中 政府가 一次的으로 推進하는 事業은 母體原料工場인 나프타分解센터를 비롯하여 9個의 系列工場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1968年 3月 22日 蔚山現地에서 起工式을 擧行하였다.

石油化學工業은 巨大한 資本과 高度의 技術이 必要한 裝置工業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開發되는 誘致工業인 만큼 政府는 다음과 같은 方針을 樹立推進하여 온 것이다.

1. 나프타分解센터를 除外한 系列工場의 推進主體로 韓國化學工業의 先驅的 位置에 있으며, 經驗과 能力을 活用할 수 있는 忠州肥料를 擇하였고

2. 建設財源의 造成은 借款對 株式比率 70 : 30을 基準으로 하고 外國側과의 合作投資를 原則으로 하였다.

3. Combinat 形成을 爲하여 團地化, 附帶施設의 集中化 및 施設의 規格化를 꾀하였다.

前記 方針下에 推進中인 各事業은 計劃대로 進行되어 目標年度인 71年度 末頃에 正常 稼動되어 年間 約 1億弗의 外貨節約을 期함은 勿論, 系列産業을 誘致하고 低廉한 勞動力을 活用하여 最終製品의 輸出을 圖謀하게 될 것이다. 石油化學工業 事業計劃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 表와 같다.

蔚山 石油化學 工業團地內 工場總括

事業名	規模 (MT/YR)	事業主體	所要資金 (千弗)		
			借款	株式投資	合計
나프타分解工場	에틸렌基準 100,000	油公 (油公 GULF)	45,600	14,400	60,000
폴리에틸렌 및 V. C. M 工場	폴리에틸렌 50,000 V. C. M. 60,000	韓洋化學 (忠肥 DOW)	24,300	10,410	34,710
에탄올 및 아세트알데히드工場	에탄올 20,000 아세트알데히드 25,000	東信化成	16,160	6,940	23,710
아크릴로니트릴工場	아크릴로니트릴 26,400	東西石油化學 (忠肥 SKELLY)	14,200	6,100	20,300
알킬벤젠工場	알킬베젠 10,000	梨樹化工	2,322	1,000	3,322
폴리푸로필렌工場	폴리푸로필렌 20,000	國泰産業	19,967	4,727	24,694

*商工部 石油化學科

合成고무(SBR) 工場	SBR 15,000	韓國合成고무 (三洋타이야 ASRC)	6,832[8]	1,875	8,707[8]
카프로락탐 工場	카프로락탐 33,000	韓國카프로락탐	22,000	9,930	31,930
유티리티 및 整備센터		支援工團	4,996	6,200	16,196
合計			161,377[8]	61,582	221,959[8]

2. 石油化學工業 育成法制定動機(必要性)

第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上에서 綜合製鐵工場 建設事業과 함께 重點的으로 開發育成코자 하는 石油化學工業은 莫大한 資本과 高度의 技術이 必要한 裝置工業으로서 現在 全量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各種 石油化學製品의 基礎 및 中間原料를 生產 供給하게 될 基幹產業인 것이다. 이와 같이 石油化學工業은 國民經濟發展을 爲하여 時急히 開發되어야 할 產業임에도 不拘하고 晩時之歎이 있으나 이제서야 開發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內的 外的 制約에 起因되었던 것이다.

첫째 製品需要의 未開發, 資金의 不足 및 高度化된 技術의 뒷받침의 缺如 等 內的 制約이 있으며, 둘째 先進石油化學工業國의 生產規模의 大單位化, 生產技術의 繼續的인 開發 및 積極的인 產業保護 等의 外的威脅으로 因하여, 品質이나 價格面에서 相對的으로 不利한 位置에 處해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難關을 克服하기 爲하여는 稅制上의 支援 等 政府가 全幅的인 政策的 支援을 하고 合理的인 育成을 爲하여 同工業의 系列化 및 集團化를 꾀하고 安定된 原料源을 確保함으로써 聯關工業의 誘發을 促進하고 中小企業의 安定된 發達을 期하고저 本育成法을 制定하기에 이른 것이다.

3. 石油化學工業 育成法 概要

1970年 1月 1日 制定 公布된 바 있는 全文 19條 附則으로 된 本育成法의 主要骨子는, 이 法의 適用을 받는 石油化學工業은 石油化學製品의 原料를 生產하는 工業에 限하도록 그 範圍를 定하였으며 支援事業은 工業團地內의 石油化學工業에 對하여 電氣, 蒸氣, 用水 및 整備 用役 等을 供給하는 事業으로 하고, 石油化學工業 育成 基本計劃과 年度別 施行 計劃을 樹立公告토록 하였으며, 石油化學工業과 支援事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商工部에 登錄토록 하고 石油化學工業者 및 支援業者가 供給하는 重要原料와 電氣, 蒸氣 및 用水 等의 供給價格은 商工部長官의 事前承認을 받도록 하였으며, 石油化學工業團地 豫定地域은 商工部長官의 要請에 따라 建設部長官이 指定公告토록 하여 工業團地를 造成하고, 工業團地에 入住시키고자 할 때에는 事前에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받도록 하였으며, 石油化學工業者에 對하여 事業合理化를 爲한 指示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法의 效力 時限은 10年間으로 되어 있다.

4. 條項別 解說

第1條 目的

本條는 石油化學工業 開發을 爲하여 莫大히 所要되는 外資의 誘致와 高度化된 技術導入 等을 圓滑히 하고 또한 系列化 및 集團化를 圖謀하여 石油化學工業을 合理的으로 保護育成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第2條 用語의 意義

이 條項은 本育成法의 規制를 받을 對象 卽 石油化學工業의 範疇, 石油化學工業團地 및 支援事業 等에 關한 定義를 規定하고 있다.

1. ①項에서 "石油化學工業"이란

(1) 石油, 天然가스 또는 精油廢가스를 化學的으로 處理하여 低級 炭化水素類를 製造하는 工業

(2) 低級 炭化水素類, 芳香族 炭化水素類, 石油, 天然가스 또는 精油廢가스를 主原料로 하여 合成樹脂, 合成纖維, 合成고무, 合成洗劑 可塑劑 等 石油化學製品의 原料를 製造하는 工業中에서 別途 大統領令이 定하는 製品을 生產하는 工業을 말하며, 다만 石油精製工業, 潤滑油 및 同系製品製造工業 및 石油化學工業製品을 加하는 工業은 이를 除外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2. ②項에서 "石油化學工業團地"라 함은 石油化學工業을 合理的으로 開發育成하는 方便으로 集團化하기 爲하여 政府의 計劃에 따라 區劃造成하는 團地를 石油化學團地라 規定하였다.

3. ③項은 "支援事業"에 關한 規定인데

(1) 前項의 規定에 依한 團地를 造成 運營하는 事業과,

(2) 團地 안에 位置하여 그 團地內에서 石油化學工

業을 營爲하는 者에 對하여 電氣, 蒸氣, 用水, 整備, 工作, 用役 等을 供給하는 事業과,

(3) 消防事業, 輸送事業, 醫療事業, 및 警備事業 等 石油化學工業에 共通되는 附帶事業을 營爲하는 事業 等으로 規定하고 있다.

第3條 基本計劃

本條는 石油化學工業 育成 基本計劃에 對한 總括的 規定이며 同 施行計劃 및 同 計劃의 變更에 關한 條項은 第4條, 第5條에 各各 規定하고 있다.

1. ①項에서는 石油化學工業育成 基本計劃은 商工部長官이 樹立 公告하도록 規定되어 있으며,

2. ②項에는 前項의 基本計劃에는

(1) 石油化學工業製品 및 그 原料의 需給에 關한 事項
(2) 石油化學工業의 施設規模에 關한 事項
(3) 石油化學工業의 系列化에 關한 事項
(4) 團地造成運營에 關한 事項
(5) 石油化學工業의 技術開發에 關한 事項
(6) 石油化學工業의 育成을 爲하여 必要한 其他事項

을 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第4條 施行計劃

本條는 前條의 規定에 依한 基本 計劃을 實施하기 爲하여 商工部長官은 每年 施行計劃을 作成하고 施行 30日 以前에 이를 公告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第5條 計劃의 變更

本條는 石油化學工業育成 基本計劃 및 同施行計劃의 變更에 關한 規定으로서

1. ①項에는 新規工程開發 等에 依한 技術變動, 需要增大 等으로 因한 生產條件 變動, 其他 所要資金 變動 等 經濟的 與件의 變動에 依하여, 必要한 때에는 商工部長官은 基本計劃 또는 施行計劃을 變更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으며,

2. ②項에는 商工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基本計劃 또는 施行計劃을 變更할 때에는 30日 以前에 이를 公告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第6條 團地 豫定地域의 指定

本條는 團地의 豫定地域의 指定公告에 關한 規定으로서 商工部長官의 要請에 따라 建設部長官이 이를 指定하여 公告토록 規定하였다.

第7條 事業의 登錄

이 條項은 石油化學工業 또는 支援事業 營爲者의 登錄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本條는 資本投下의 效率性을 높이기 爲하여 需要에 適應한 施設을 設置하고 施設規模가 國際競爭上 過少하여 運營의 合理化가 困難하거나 生產製品의 價格이 國際價格을 上廻하는 것을 防止하고, 生產工程이나 技術이 國際的으로 落後되지 않도록 하며, 事業을 營爲할 수 있는 財政的 또는 技術的能力을 保有토록 하고 外國人의 投資比率 또는 他人資本의 借入率이 過大하지 않을 것 等 石油化學工業의 合理的인 開發育成을 爲하여 設定하였다.

第8條 團地의 造成 및 管理運營

本條項은 支援事業者의 團地의 造成 管理運營 및 團地分讓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石油化學工業團地를 造成하여 同工業을 集團化시키는 目的은 石油化學工業을 合理的으로 系列化하고 支援施設을 集中化하여 施設投資費와 附帶費를 輕減하기 爲한 것이므로, 系列化가 必要치 않은 工業과 本法의 育成對象外의 加工工業 等의 入住를 制限함으로써 工業團地의 效率的인 運營을 圖謀하기 爲하여 設定한 것이다.

第9條 事業合理化를 爲한 指示

本條項은 石油化學工業者 및 支援事業者에 對한 指示, 그리고 關聯事業體에 對한 行政措置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다. 石油化學工業은 高度化된 裝置工業으로서 日益 發展을 거듭하고 있는 實情으로, 他工業에 比하여 加一層 國際競爭力 强化가 要請되는 特殊工業이므로, 先進開發國에서도 大單位團地化 및 系列化로 國際競爭에 臨하고 있다. 이러한 與件下에 出發하는 우리 나라 石油化學工業도 事業合理化를 期하고 國際競爭力을 培養하기 爲하여 本條項을 設定하였으며, 特히 關聯事業을 營爲하는 者에게도 法에 定한 事項의 制限된 措置를 規定한 것은 單只 一般的인 行政上의 권고만으로는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없음에 起因되었다.

第10條 價格의 承認

本條는 石油化學工業者가 生產供給하는 나프타 溜分과 支援事業者가 生產供給하는 電氣, 蒸氣, 用水 및 大統領令이 定하는 其他 製品의 價格에 對하여는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도록 規定하였다.

本條 規制原因은 이 法의 適用을 받을 石油化學工業 및 支援事業은 基礎 및 中間原料生產工業으로서 石油化學工業 發展의 關鍵이 되고 있는 需要開發과 價格形成의 決定的인 影響力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高度의 系列化가 必要한 工業이므로, 價格의 調整은 系列工場과 消費者에게 低廉한 原料 및 製品을 供

給함으로써 需要의 開發 및 系列化의 造成促進을 通한 石油化學工業 育成을 爲하여 不可避한 일이며, 또한 同工業은 國內需要面을 考慮할 때 當分間 完全한 競爭體制가 確立되지 않을 것이 豫想되므로 石油化學工業의 健全한 育成을 爲하여는 그 價格을 市場機能에만 放任할 수 없는 實情에 起因된다.

한편, 價格引下策으로서 政府에서는 石油化學工業 및 支援事業에 對하여 施設材의 關稅와 法人稅 및 營業稅 等을 免除하는 한편, 價格의 承認對象도 原價의 比重이 큰 基礎原料에 限定하여 運用할 計劃이며, 企業의 適正한 利潤이 保障되도록 調整될 것이므로 憲法에 保障된 企業의 自由를 根本的으로 侵害하지는 않을 것으로 解釋된다.

第11條 石油化學工業審議會

本條項은 諮問機關인 石油化學工業審議會의 設置運營에 關하여 規定하였다.

政府 關係 各部處의 公務員및 石油化學工業分野에 對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들로 構成된 審議會는 政府가 石油化學工業의 範圍, 基本計劃樹立 및 價格承認 等 石油化學工業을 合理的으로 育成함에 있어서 重要事項을 決定하기에 앞서 商工部長官의 諮問에 依하도록 本條를 設定한 것이다.

第12條 登錄의 取消

本條는 登錄取消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였다. 本條의 設置는 石油化學工業의 早速한 開發, 製品의 適期供給과 過剩施設의 抑制, 經濟單位 以下 規模의 工場亂立防止, 電氣, 蒸氣, 用水 및 用役 等의 適期供給, 團地運營의 合理化, 그리고 需要開發 및 系列化의 造成促進을 通하여 合理的으로 開發育成코저 함에 起因하였다.

第13條 土地收用 等

이條는 土地收用 等에 關하여 規定하였다. 本條의 設置는 石油化學工業이 新規開發工業인 關係로 現行土地收用法의 適用을 받지 못하도록 規定되어 있어 石油化學工業 開發의 時急性을 勘案하여 短時日內에 團地造成을 하도록 하기 爲하여 設定된 것이다.

第14條 調査 및 報告

本條는 經營實態報告書 徵求 및 事業實態調査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였다. 合理的인 石油化學工業 育成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의 樹立과 効率的인 施行을 뒷받침하기 爲하여는, 石油化學工業者 및 支援事業者의 經營實態와 事業實態를 正確히 把握하여야 하므로 各者의 工事進度, 生產實績 및 業務實態 等을 報告토록 하고 必要할 때에는 所屬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直接調査할 수 있도록 規定한 것이다.

第15條 研究 및 技術開發의 支援

本條는 研究 및 技術開發의 支援에 關하여 規定하였다. 石油化學工業은 元來 그 開發이 日淺할 뿐더러 技術性의 優劣에 成敗가 起因되므로, 先進開發國의 境遇에도 企業營爲者 各自가 競爭的으로 技術開發을 爲하여 莫大한 資本을 投入하여, 不斷한 研究와 온갖 心血을 傾注하고 있으며, 그 成果로 새로운 製品과 革新된 工法 等이 續出하고 있는 實情이다.

石油化學工業開發이 初創期인 우리 나라의 境遇, 全的으로 外國의 技術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하루속히 이러한 落後性을 脫皮하여 우리의 技術性도 一定水準에 到達하도록 各企業營爲者 自體에서 꾸준한 努力을 기울일 것이다. 政府에서도 이의 積極的인 支援策으로 補助金管理法 等을 活用하여 補助할 수 있도록 本條를 設置하였다.

第16條 特別償却

本條는 特別償却에 關하여 規定하였다. 石油化學工業은 裝置工業으로서 巨額의 資金을 固定시킴과 同時에 그技術의 進步는 그것을 短時日內에 廢品化시킬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어, 法人稅法에 依據 特別償却을 할 수 있도록 本條를 設置하였다.

第17條 罰則

本條는 罰則에 關하여 規定하였다. 石油化學工業은 他產業에 比하여 事業別 投資規模가 尨大할 뿐 아니라 本育成法에서 規制하는 事項의 履行與否가 石油化學工業發展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므로 規制事項의 徹底한 履行을 促求하기 爲하여 本條를 設置하였다.

第18條 兩罰規定

本條는 兩罰事項에 關하여 規定하였다. 前述한 바와 같이 石油化學工業者 및 支援事業 營爲者로 하여금 規制事項의 重要性을 再認識하여 徹底히 遵守하도록 處罰對象을 行爲者에 그치지 아니하고, 行爲者가 所屬한 法人 혹은 自然人까지도 處罰토록 本條를 設置하였다.

第19條 施行令

本條는 施行令에 關한 規定인 바 이 法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고 規定하였다.

附則

本附則에는 施行日, 時限 및 經過措置 等에 關하여 規定하였다. 本育成法制定은 石油化學工業을 集中的으로 育成하는 한편 適切한 規制, 稅制上의 支援 및 行政的인 指導 等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需要伸張에 따른 工場亂立의 防止로 規模를 增大하여 各單位工場別로 國際競爭力이 갖추어질 段階까지 育成하기 爲한 것이다. 따라서 各單位工場들이 增設擴張하여 正常稼動時까지는 대개 7~8年이 豫想되나 國際競爭單位規模로 繼續育成하기 爲하여 10年 時限法으로 規定하였다.

石油化學工業育成法(法律 第2182號, 1970. 1. 1. 公布)

第1條(目的) 이 法은 石油化學工業을 合理的으로 育成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① 이 法에서 "石油化學工業"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品을 生產하는 工業을 말한다. 다만 石油精製工業, 潤滑油 및 同系製品製造工業, 아스팔트 製造工業 및 石油化學工業製品을 加工하는 工業은 이를 제외한다.

1. 石油 天然가스 또는 精油廢가스를 化學的으로 處理하여 低級炭化水素類를 製造하는 工業
2. 低級炭化水素類, 芳香族炭化水素類, 石油 天然가스 또는 精油廢가스를 主原料로 하여 合成樹脂, 合成纖維, 合成고무, 合成洗劑, 可塑劑 등 石油化學製品의 原料를 製造하는 工業.

② 이 法에서 石油化學工業團地(이하 "團地"라 한다)라 함은 石油化學工業을 集團的으로 開發育成하기 爲하여 政府의 計劃에 따라 區劃造成하는 團地를 말한다.

③ 이 法에서 "支援事業"이라 함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團地造成運營하는 事業과 團地 안에 位置하여 그 團地內에서 石油化學工業을 營爲하는 者에 대하여 電氣, 蒸氣, 用水, 整備 工作 用役 등을 供給하는 事業 및 石油化學工業에 共通되는 附帶事業을 營爲하는 事業을 말한다.

第3條(基本計劃) ① 商工部長官은 石油化學工業育成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定하여야 한다.

1. 石油化學工業製品 및 그 原料의 需給에 關한 事項.
2. 石油化學工業의 施設規模에 관한 事項
3. 石油化學工業의 系列化에 관한 事項
4. 團地造成運營에 관한 事項
5. 石油化學工業의 技術開發에 관한 事項
6. 石油化學工業의 育成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事項

第4條(施行計劃) 商工部長官은 前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을 實施하기 위하여 每年 施行計劃을 作成하고 施行 30日 이전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5條(計劃의 變更) ① 商工部長官은 石油化學工業의 技術 및 生產條件과 기타 經濟的 與件의 變動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本計劃 또는 施行計劃을 變更할 수 있다.

② 商工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 또는 施行計劃을 變更할 때에는 이를 施行 30日전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6條(團地豫定地域의 指定) 團地의 豫定地域은 商工部長官의 要請에 따라 建設部長官이 이를 指定하여 公告한다.

第7條(事業의 登錄) ① 石油化學工業 또는 支援事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商工部에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8條(團地의 造成 및 管理運營)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支援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支援事業者"라 한다)로서 團地를 造成管理運用하고자 할 때에는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團地를 分讓하고자 할 때에는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9條(事業合理化를 爲한指示) ① 商工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依하여 石油化學工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石油化學工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事項에 관한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1. 製品의 生產需給에 관한 事項
2. 生產施設의 設置 擴張 및 改補修에 관한 事項

② 商工部長官은 支援事業者에 대하여 다음 事項에 관한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1. 石油化學工業者에게 供給하는 電氣, 蒸氣, 用水 및 用役 등의 供給量과 그 供給方法에 관한 事項
2. 支援施設의 設置 擴張 및 改補修에 關한 事項
3. 團地의 管理運營과 入住에 관한 事項

③ 商工部長官은 前項의 指示에 대한 履行을 圓滑히 하기 爲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에 關聯되는 事業을 營爲하는 者에 대하여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10條(價格의 承認) 石油化學工業者가 生產供給하는 나프타 溜分과 支援事業者가 生產供給하는 電氣, 蒸氣, 用水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타 製品의 價格에 대하여는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1條(石油化學工業審議會) ①石油化學工業에 관한 商工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商工部長官所屬下에 石油化學工業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審議會의 機能 組織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登錄의 取消) 商工部長官은 石油化學工業者나 支援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1.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날로부터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期間內에 그 事業을 着手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事由 없이 第9條 第1項 및 同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示를 違反하였을 때
3. 第8條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4.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第13條(土地收用 등) 團地를 造成하는 支援事業者는 團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團地豫定地域 안의 土地, 建物, 物件, 其他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土地收用法을 適用한다.

第14條(調査 및 報告) 商工部長官은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의 樹立 및 施行을 爲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石油化學工業者 및 支援事業者의 經營實態에 關하여 보고를 받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業實態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第15條(研究 및 技術開發의 支援) 政府는 石油化學工業에 대한 研究 및 技術開發事業을 행하는 者에 대하여 必要한 補助를 할 수 있다.

第16條(特別償却) 石油化學工業者가 企業의 設備를 新設 또는 增設하는 경우에는 法人稅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償却 할 수 있다.

第17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石油化學工業 또는 支援事業을 營爲하는 者
2.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②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에 불응하거나 虛僞로 보고한 者는 30萬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8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自然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前條의 規定에 의한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自然人에 對하여도 前條의 規定에 의한 罰金刑을 課한다.

第19條(施行令) 이法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하되 施行日로부터 10年間 效力을 가진다.

②(經過措置) 石油化學工業 또는 支援事業을 營爲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內에 法 7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여야 한다.